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폐쇄명령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의 3제1항제1호	시설 폐쇄 명령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8조의	시설	-	-	-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3제1항제2호	폐쇄 명령			
다.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 3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명령	-	-	-
라.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38조의 3제1항제4호	시설 폐쇄 명령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 3제1항제5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운영 정지 1개월	운영 정지 2개월
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10의2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별표 10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배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 3제1항제6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1개월	운영 정지 2개월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20일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15일
		개선 명령	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1개월	운영 정지 2개월

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고의로 해양에 배출한 경우		시설 폐쇄 명령	-	-	-
나)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과실로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시설 폐쇄 명령	-
다)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운영 정지 3개월	시설 폐쇄 명령	-	-
4)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영 정지 3개월	시설 폐쇄 명령	-	-
사. 신고 후 1년 이내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7호	개선 명령	운영 정지 6개월	시설 폐쇄 명령	-
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1항제8호	운영 정지 6개월	시설 폐쇄 명령		